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11458 판결 [보증금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6. 7. 21.

판결 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 1)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던 C는 2008년경 원고로부터 사업운영자금 2억2,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C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395호)은 2011. 2. 11. C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2) C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 2023호)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1년 12월경,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원고와 형사합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
- 3) 이에 피고는 2011. 12. 20.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2억6,0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C가 2012. 1.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증인 교체 요구

- 1) C는 2012.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C와 피고에게 수차례 채무이행을 독촉하였다.
- 2) 피고는 2013년 9월경 원고 및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C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보증인으로서의 자력이 없고 C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며자신을 보증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C도 원고에게 자력이 있는 다른 보증인을 세울테니 피고와 교체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보기에 자력이 충분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을 교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와 F 등의 보증계약

- 1) C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한 보증인을 교체해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F이 이에 동의하자 C는

원고에게 G, H(G의 대표이사로서 F의 처)을 새로운보증인으로 제시하였고(이하 새로운 보증인들을 'G 등'이라 한다), 원고는 G 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하였다.

2) 원고의 대리인 I, C, G 등의 대리인 F은 2013. 11. 12. 법무법인 화평의 사무실에서 G 등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한 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원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보증채무 면제 항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와 원고는 2013년 9월경 구두로, C가 원고에게 자력이 있는 다른 보증인을 제시하면 보증인을 교체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2013. 11. 12. C가 제시한 새로운 보증인인 G 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인이 교체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는 면제되었다.

나) 원고

피고와 D는 아무런 자력이 없는 보증인이었고,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보증인인 G 등의 신용을 조사하여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G 등의 자력 역시 불충분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보증인을 교체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가 원고에게 피고를 새로운 보증인과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력이 충분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을 교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가 2013. 11. 12. G 등과 추가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의 보증인교체 요구에 대하여 새로운 보증인의 변제자력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교체에 응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C에게 'G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C, F의 각 증언 외에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을 제3호증)에도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한 중요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갑 제1호증)를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당초의 보증인인 피고와 D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어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물적 담보의 보충이나 확실한 변제 자력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이 G 등이 보증인으로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위 G 등 또한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C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에도 원고에게 '피고의 보증채무를 속히 면제해 달라'든가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겠다'는 등으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동하기도 하였던 점(증인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역시 C에게 1,000만 원이라도 변제하면 피고를 보증인에게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역시 피고의 보증채무가 유지되고있음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증인 F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리인인 I 으로부터 '피고가 보증인 교체를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뉘앙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C,F의 각 일부 증언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보기에 자력이 충분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을 교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 등이 새로운 보증인으로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확정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이지웅, 판사 이진규